



일본, 가족신탁 시장의 성장

강윤지 연구원

요약

일본에서 가족신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가족신탁은 세제 혜택이 있고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제도에 비해 유연하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가족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도 가족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 가족신탁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자산 관리 방법의 하나인 가족신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¹⁾

- 가족신탁은 고령자가 자신의 자산(현금·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생명보험 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유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권리를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2007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등장한 자산 관리 방식임
- 일본 가족신탁 보급협회 조사 결과²⁾에 의하면, 가족신탁에 대한 상담 및 수임 건수는 2017년 대비 2022년 약 11배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상담 건수는 약 29%, 수임 건수는 약 36%가 성장함

○ 가족신탁은 증여세 및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제도에 비해 유연하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표 1〉 참조)

- 가족신탁 자산은 가족이 수탁자로서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자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투자·부동산 구매 등 유연한 자산 관리가 가능함³⁾
- 일본에서 치매 환자가 되는 경우 자산 동결 상태가 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지만, 가족신탁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동결이 되지 않음
 - 자산 동결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써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후견인에 대한 비용이 매월 발생하며 자산 사용 용도에 제한이 발생하고 제도 이용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가족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들도 부대 서비스로서 가족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핀테크 회사는 스마트폰으로 가족신탁 자산 관리가 가능한 간편 서비스를 출시함

- 가족신탁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2016년까지 미쓰미 스미토모 신탁은행, 히로시마 은행 등 일부 은행에 한정되어

1) 相続サポートセンター(2023. 2. 1), “家族信託とは? メリット・デメリットや手続きの流れ・費用を徹底解説”

2) 一般社団法人 家族信託普及協会(2023. 3. 27), “FACTBOOK (2022) より”

3) グリーン司法書士(2021. 2. 2), “家族信託が認知症対策に一番おすすめる7つの理由と具体的な解決事例”

있었지만, 2017년 이후 가족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⁴⁾

- 가족신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탁 자산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2022년부터 도쿄 해상 닛동 안신 생명, 칸포 생명, 라쿠텐 생명 등은 가족신탁 컨설팅 회사인 패밀리라와 제휴하여 '가족신탁 조성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험 가입자들에게 초기 비용을 감면해 주거나 우대해 주는 방식으로 가족신탁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가족신탁 가입에 필요한 복잡한 계약서 작성 및 상담 과정을 반자동화하여 수수료를 낮춤
- 일본의 핀테크 기업인 트리니티 테크놀로지는 가족신탁 자산을 앱으로 쉽게 관리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가족신탁' 서비스를 최초로 출시함

○ 가족신탁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고, 주 수요층인 치매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일본의 가족신탁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트리니티 테크놀로지'가 실시한 가족신탁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⁵⁾ '가족신탁을 이용하는 것이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4%에 이름
- 일본 후생노동성⁶⁾에 의하면 2015년 525만 명이었던 일본의 고령자 치매 환자 수는 2025년 7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령자 중 대략 20%가 치매 환자가 됨을 의미함

〈표 1〉 증여·성년후견제도·가족신탁의 특징 및 단점

구분	특징	단점
증여	• 의사능력이 있는 동안 가족에게 자산 승계 가능	• 증여세 및 부동산 취득세 과세 • 증여 이후 취소 불가
성년 후견 제도	• 의사능력 상실 후 자산 보전이 가능함 • 법원을 통해 이루어짐	•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정기보고 등의 절차가 있음 • 가족 외의 제3자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되면 운영비용이 발생함 • 효력 발생까지 시차가 발생함
가족 신탁	• 치매가 되어도 자산 동결이 되지 않음 • 증여세 및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당사자 간 합의로 취소 가능 • 법원을 통한 별도의 절차가 없음 • 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효력 발생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음	• 가족이 없는 경우 이용 불가

자료: グリーン司法書士(2021. 2)

4) トリニティ・テクノロジー(2022. 9. 1), “【調査レポート】家族信託等の利用動向を示す土地信託登記件数 2022年上半年は昨年対比149%増加”

5) トリニティ・テクノロジー(2022. 9. 22), “「家族信託」の利用経験者316名を調査、約9割が「家族信託を実施して良かった」と満足の声”

6) 厚生労働省(2019. 6. 20), “認知症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ついて”